

분류기호	시설30312-
문서번호	2487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
시행일자	89. 4. 4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권결 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2계장
기안책임자	김영환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
계부	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
(제1안)	내부결재
1. 도정30310-207호('89.2.17)와 관련입니다.	
2. 서울특별시 고시 제166호('77.5.30)로 결정 고시된 관악구 신림동 589-1일대에 대하여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도포와 중복 결정된 학교용지 해제 요청이 있어 우리시 '89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('89.3.24)에서 심의 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변경결정 코자 합니다.	
첨부	관련서류 1부. 끝.
(제2안)	2487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47)

시행장 특별취급	합조 1989. 4. 7 도시계획과장 권결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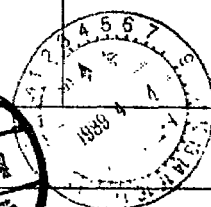


김영환

법무담당관
협조통제관
김영환

문서통제
1989. 4. 4
도시계획과장
김영환

발송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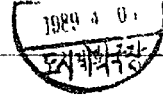

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시설계획과장)
제목 : 같 음.
1. 우천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별안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보고 합니다.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(제3안)
수신 : 총무처장관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가. 게재구분 : 고시.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타. 게재내용 : 별첨 고시문.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(제4안) 결재
수신 : 관악구청장 (도시정비과장)
제목 : 같 음.
1. 도정30310-207호('89.2.17)와 관련임.

2. 위호로 관악구 신림동 589-1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 결정

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기 통보하니 도면 정리 및 관계과에
통보하고 지적승인등 도시계획 업무 수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

(계5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 - 33

발신 : 시(과)장

제목 : 같 음.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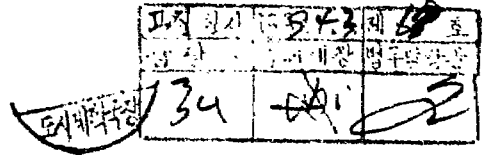
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, 지적과,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(관리과장).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69 호
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



1.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9. 4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m ²)	비 고
기정	학 교	관악구 신림동 589-1	11,580	난우극교
변경	"	" 1	11,284	(감, 296m ²)

나. 도면 : 관악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